
2021/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IPP)

인도네시아 산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
-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
제안요청서

2021. 11.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

목 차

I. 제안 안내	1
1. EIPP 개요 / 1	
2. 과업 개요 / 2	
3. 진행 일정 / 2	
II. 제안 일반사항	3
1. 입찰 및 계약방법 / 3	
2. 입찰 공고 / 4	
3. 입찰 참가자격 / 4	
4. 입찰시 유의사항 / 4	
5.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/ 7	
6. 제안서 평가방법 / 15	
III. 과업내용	16
IV. 제안서 작성요령	22
붙임 1 : 제출서류목록	23
붙임 2 :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기준	24

I. 제안 안내

1. EIPP 개요

□ EIPP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설('19.2.14)된 KSP*의 새로운 사업 모델

* Knowledge Sharing Program (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)

- 협력국과 협의하여 협력국 경제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·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(테마)를 선정하고,
- 해당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, 법·제도 정비, 관련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연 5건 내외 3년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

□ 한 국가에 연 1~2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을 지원하는 기존 KSP와 달리, EIPP는 협력국 경제·사회발전에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도모

- 프로그램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연도별 세부사업을 사전에 협력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

□ 본 과업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과 관련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인니 수도 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, 정책 및 전략 계획, 법·제도 등 수립 지원코자 추진됨

□ 2021/22 인도네시아 EIPP 사업(전체)

연번	도출사업 목록	연도	관련부서
1	신수도 개발계획 2차 - 토지확보, 활용 및 실행관리조직(PMO) 운영 - 신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안 - 민관협력 모델을 통한 토지활용 방안 - 신수도 실행관리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	2021	국가개발기획부, 농지공간기획부
2	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-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 - 국부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전략 - 자보데타백 지역 정부자산(이전적지) 매각 등 활용방안 - 한-인니 민/관 금융협력 방안	2021	국가개발기획부,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
3	신수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계획 - 숲도시 개념 및 정량·정성적 핵심성과지표(KPI) 정립 - 신수도 마스터플랜, 전략적환경평가(SEA)와 숲도시 개념, KPI 연계 - 한국 녹색성장 경험/노하우 연구 및 숲도시 이행 장·단기 로드맵	2021	국가개발기획부, 환경산림부
4	신수도 지능형교통체계 및 전기차 대중교통 도입 기본구상 - 신수도 지능형교통체계 기존계획 리뷰 및 정책제언 - 신수도 전기차 대중교통 및 관련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-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(자율주행, UAM, 연료전지) 사례분석 및 신수도 적용 검토	2021	국가개발기획부, 교통부
5	신수도 에너지전환계획 2차 - 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- 1차년도 신수도 에너지전환 마스터플랜 고도화 - 가스활용 관련 한국 정책 및 기술 우수사례 공유 - 신수도 가스 활용 최적화 로드맵 제안	2021	국가개발기획부, 에너지자원부

2. 과업 개요

- 과업명 : 「2021/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(EIPP)」 인도네시아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-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
-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300일
- 사업예산 : 금 330,000,000원 (부가세 포함)

3. 진행 일정

□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

- 제출기한 : “입찰공고” 에 따름
- 제출서류 : 입찰참가신청서 1부, 기술제안서 10부 및 관련 서류 등
 - * 제출서류 목록은 붙임 1 참조
- 제출방법 : 온라인(e-발주 시스템) 제출 및 출력물 제출
 - * 제출기한 내 온라인(e-발주 시스템) 제출 및 출력물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함.
 - * 제출장소 :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전략기획본부 해외인프라경제연구실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Three IFC 50층)

□ 가격입찰 (전자입찰서)

- 입찰기한 : “입찰공고” 에 따름
- 입찰장소 : 조달청 나라장터
- 개찰일시 :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(별도 통보)

-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,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
- 기한 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(가격입찰)를 모두 제출하여야 입찰이 유효함

□ 제안서 평가 :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

- * 입찰자는 우리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야 함
- * 단, 현장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음
- * 입찰참가자는 온라인 평가를 대비하여 제안서를 원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회의 장비 (카메라, 스피커, 마이크 등) 및 온라인(인터넷) 환경을 갖춰야 함

□ 계약협상 : 협상 일정은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

□ 문 의 처

- 사업문의 : 해외인프라경제연구실
☎) 02-6746-7469, 7413
✉) eipp@kindkorea.or.kr
- 입찰, 계약문의 :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
☎) 02-6746-7462, 7464
✉) contract@kindkorea.or.kr

II. 제안 일반사항

1. 입찰 및 계약 방법

- 입찰방법 : 일반경쟁입찰, 총액입찰
- 낙찰자 결정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”에 의거, “협상에 의한 계약방식”을 적용
- 제안서의 평가 : 기술능력(90%)과 입찰가격(10%)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협상적격자 선정 :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 - *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%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
- 최종낙찰자 선정
 - 협상은 우리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
 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함
 - * 기술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, 기술평가 점수 상위자를,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,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
 -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후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함
 - * 협상금액 등의 결정은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」에 따름

2. 입찰공고

- 공고방법 :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 (<http://www.kindkorea.or.kr>)(정보공개 - 입찰정보) 공고
- 공고기간 : “입찰공고”에 의함

3. 입찰참가자격 (동시충족)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(G2B)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**학술·연구용역(업종코드:1169)**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-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(서식4)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.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

4. 입찰 시 유의사항

-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,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25/1,000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
 - 입찰보증보험증권(입찰보증서)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

-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우리 공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함

※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” 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2호, 2021.7.1. 시행)에 따라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,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·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

□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

- 공동수급체(공동이행방식)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
-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,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을 10% 이상으로 해야 함
-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- 공동수급표준협정서(1부)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
-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동계약운용요령」에 따르며,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동 규정 숙지

□ 계약보증금의 납부

-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75/1,0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

□ 입찰무효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입찰유의서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함

*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

□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. 이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

- 제안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며, “할 수도 있다”, “고려할 수 있다” 등 추상적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
 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 -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 - *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“사실과 상위 없음”(또는 “원본대조필”)을 날인하여 제출
 -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청렴 계약이행 준수
-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
 - *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대표자가 각각 제출
-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 또한 제출된 문서·서류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
- 입찰자는 입찰공고문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입찰유의서」,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, 용역계약특수조건,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및 사업자등록증(개인) 상 대표자(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), 주소,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
- 본 입찰은 「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」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「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

-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(1588-0800)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 참고
-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(제출)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,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, 정부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

5. 최종낙찰자 유의사항

- 과업의 일반원칙
 - 자료활용
 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 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 - 과업수행원칙
 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 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 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 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

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○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○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○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○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규정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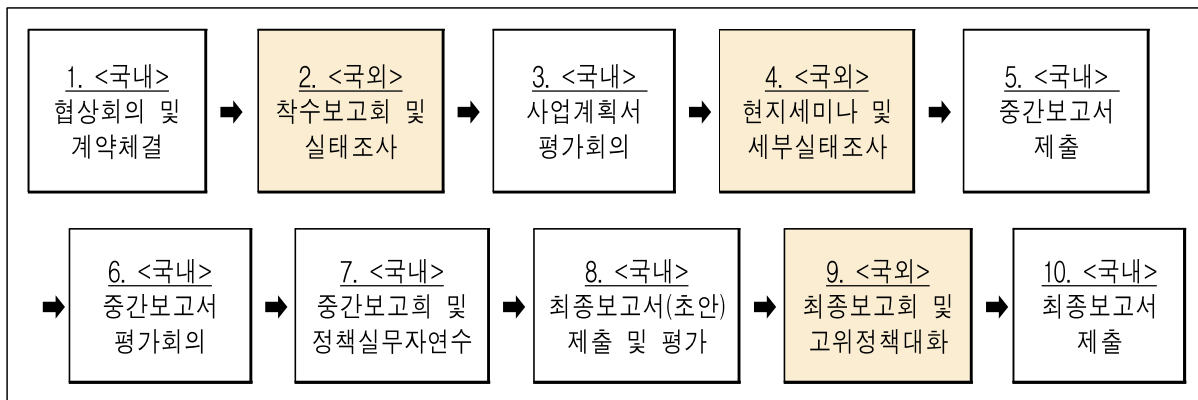
○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-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
- 국외출장 및 정책실무자연수 개최 시 출장자 및 연수 참가자가 여행자보험을 가입토록 하고, 보상 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. 아울러, ‘국외 체류 시 안전매뉴얼’에 따라 안전지침,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정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함

- 해당 사업의 특성상, 사업의 범위,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
- 과업수행사의 연구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함
- 과업내용(주요 결과물)은 발주자 및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
- 연구책임자는 모든 현장 활동 및 우리공사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, 전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

□ 과업수행 방법

<2021/22 EIPP 사업 단계>



※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추진방안 마련

○ 일반사항

-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(통합 실시),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(통합 실시),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(통합 실시),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(통합 실시), 국내공유세미나* 등을 수행

*국내공유세미나는 사업종료 이후 KIND에서 주관하며, 요청시 사업수행 기관(연구진)은 동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물 발표를 수행

- 필요시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로 추진
- 기타 모든 사업의 기획·집행·결과 공유 활동 등은 「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(기획재정부, 2019.10.2.)에 따라 실시

- 현지 실태조사
 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 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 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 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- 월간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 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

□ 과업성과품 제출

- 착수보고
 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서약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 -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 방안 마련
 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(착수계, 보안서약서, 과업수행계획서 등)
- 금차최종보고서
 - 진행된 사업의 주제별 주요 진행경과를 포함, 협력국 현황 분석 작성
 - 사업진행 경과보고서(국문 5페이지 이상), 주제별 보고서(국문 10페이지) 각 1부
 - 제출방식 : 이메일
- 사업 단계별 활동계획보고서(국·영문)
 - 내용 : 현지조사, 보고회(착수·중간·최종),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계획 등
 - 기한 : 활동 착수일자 2주 전
 - 제출방식 : 이메일

- 사업 단계별 활동결과보고서(국문)
 - 내용 : 현지조사, 보고회(착수·중간·최종),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결과 등
 - 기한 : 활동 종료일자 2주 내
 - 제출방식 : 이메일

- 사업계획서(국문)
 - 내용 : 확정된 과업 목표 및 범위, 사업 추진계획 및 보고계획
 - 기한 :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후 2주 내
 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

- 중간보고
 - 중간보고서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및 세부실태조사 및 연구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- 기한 : 중간보고서 평가회 개최 2주전
 - 중간보고회는 현지 수도이전 관계공무원 참석하 정책실무자 연수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보고 PPT 준비)
 - * COVID-19로 정책실무자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 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(중간보고서)

- 최종보고
 - 최종보고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·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함 (200페이지 이하, 국·영문)
 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·영문 각 3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- 필요시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 (국·영문·인니어 각 10부)
 - 기한 :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평가회 개최 3주 전 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제출

-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, 인쇄본(최종보고서), USB 1세트(성과품 관련 모든 자료)
- 사업종료보고서(국문)
 - 내용 : 사업개요, 수행과정,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
 - 기한 : 계약완료 후 20영업일 내
 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
- 수정보고서
 - 사업계획서, 중간보고서, 최종보고서는 기재부 및 KIND내부위원 외 분야별 자문평가위원의 자문(또는 평가) 과정을 별도로 거치며 자문(또는 평가)의견에 따른 수정보고서 제출
 - 제출방식 : 이메일
- ※ 착수보고서, 사업계획서 외 보고서 제출기한, 보고서/USB 제출부수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는 사업활동 점검을 위해 별도 보고서 제출 요청 가능
- ※ 점검회의 실시(최소 3회) : 1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사업계획서), 2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), 3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회 발표자료) 등

□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(별첨)를 제출 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분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6. 제안서 평가방법

□ 평가위원회 구성

- 제안서 평가는 「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(기획재정부, 2019.10.2.) 및 우리 공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

□ 평가분야별 배점

-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, 기술·가격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(90%) + 가격평가(10%)임

□ 낙찰자 선정

- 낙찰자(협상 적격자)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,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이어야 함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- 붙임 2. **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** 참조

Ⅲ. 과업내용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「2021/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(EIPP)」 인도네시아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-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

※ 본 과업은 1차년도 EIPP 과업인 「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」의 연속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의 국부펀드(SWF)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, 자보데타벵 지역의 부동산 매각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보다 고도화되고 구체적인 단계임

□ 과업배경

○ 수도이전 개관

- 자카르타와 자바섬의 인구집중 및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, 물 문제, 지반침하 등 도시문제 대두

* 자카르타 수도권에 3천만명 밀집, 전체인구의 57%가 자바섬 거주

- 정부기관이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분산되어 있어 공공행정 효율성이 저하

- 이에, 인니정부는 자바섬 밖 동부 칼리만탄섬(Kutai Kartanegara군, 北 Penajam Paser군)에 전략적 수도이전을 시행하여 불평등, 불균형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인니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음



○ 제약요인

-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개발 자금으로 약 330억 달러(40조 원)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최소 금액을 사용하고, 자금 대부분은 PPP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과 국유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
-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대통령령 No.38/2015 PPP 법안 제정과 VGF(Viability Gap Fund) 등을 설립하는 등 민간자본 유인 장치를 마련했으나 환리스크의 발생위험, 토지확보 문제, 사업 규모, 자금조달 및 예산 제약, 기타 비공식적 제반 애로사항 등의 문제로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음
-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적 투자 재원 마련과 체계적인 자금조달 정책 및 방안 수립은 수도 이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함

○ 협력국 정책 부합성

-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는 전략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를 통한 것임.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투자 유입을 늘리고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2020년 INA를 설립하였고, INA의 주요 임무는 (1) 자산 최적화 (2) 해외 및 현지 파트너와 공동 투자하여 투자 유치 (3)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
- INA는 자체 투자 펀드를 설립하거나(독립적으로 또는 제3자와 제휴를 통해) 제3자가 설립한 투자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음. INA는 자체 투자와 주요국 투자를 바탕으로 국부펀드(SWF)를 조성하고, 주요 투자 파트너와 공동 투자 형태로 다수의 하위펀드를 구성해 도로, 공항, 항만 등 다양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.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 우선 사업이자 주요 사업인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는 I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
- 또한,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에 따른 정부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1차년도 EIPP 과업 중 하나인 「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」을 통해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한 바 있음. 자보데타벡 지역의 잔존 자산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은 수도이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. 이와 함께 자보데타벡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

- 국내 정책 부합성
 - 한국 정부는 글로벌 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, KIND)를 설립하였음. KIND는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,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, 금융조달 능력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으며, PPP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 KIND는 글로벌인프라펀드(GIF) 및 글로벌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(PIS) 펀드 등 건설 특화 펀드를 조성·운영하여,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 - 자금조달방안 2차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수도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운용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,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 - 한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(세종시),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종전 부동산 매각 및 처리 사례가 있으며,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재산 매각 및 신수도 투자재원 방안에 주는 시사점이 큼

○ 사업 필요성

- 수도 이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요구되며, 자금 대부분을 PPP를 통해 조달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 수립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로 통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 제시가 필요함
-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의 설립과 함께 신수도 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기대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전적지 관리 및 국부펀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잠재 투자자 대상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 투자 실현을 위한 경제 및 재정 평가 도구(예비타당성)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

□ 과업목적

- 상기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적지 및 국부펀드 활용방안과 한·인니 금융협력을 위한 정책 자문 제공을 통한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고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

- ※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인니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
- ※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의 2020/2021 인니 EIPP(경제혁신파트너쉽프로그램), 인니 K-City Network를 통해 수행될 신수도 건설관련 타 정책자문과 기타 인니정부의 MP, 도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고 연계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
- ※ 과업수행자는 인니 정부 및 현지기관,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,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(e.g.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(자문) 회사에서 시행)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300일

3. 과업내용

[공동연구]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해 한국 경험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계획수립 체계 마련

□ 국부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전략

- 해외 국부펀드 운용 사례를 통한 현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 및 국부펀드(SWF) 구성 및 운영 검토
 -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정부 투자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며, 이를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INA 국부펀드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
 - INA 자본금 확충에 필요한 금융 조달 자문 및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대한 IR 활동 방안 도출
 - 한국의 국부펀드 사례를 통한 INA의 운영 조직 및 투자 편람에 대한 자문
- 국부펀드 및 기타 투자수단을 통한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유치전략
- 국부펀드의 신수도 관련 우선 투자 인프라 사업발굴 및 IKN 투자 전략
 - 공동 투자 또는 제휴를 통해 인프라 시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활용 계획 및 인프라 사업을 통한 IKN 투자 전략
- 신수도 개발 경제 및 재정 평가 도구(예비타당성) 수행방안 검토

- 신수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유망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, 인프라 중심의 투자플랫폼인 INA의 자산관리 및 가치 창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제안

□ 자보데타백 지역 정부자산(이전적지) 매각 등 활용방안

- 한국의 균형 발전 전략에 따른 정부 기관 및 공기업 이전 정책 배경 검토
 - 국유재산 및 공기업 재산 매각 절차
 - 이전적지 활용 방안(매각/임대 등)
 - 매각 및 이전에 따른 지자체 협력 사례
- ※ 한국 경험을 통해 기본방향, 추진과정, 방법, 법적 근거, 현황, 특성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
- 자보데타백 지역 이전적지 활용방안 모색
 - 정부, 공공기관, 공기업 소유 자산 가운데 신수도로 이전될 자산/부동산/건물/시설 도출
 - 신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공실 발생예정 자산 목록 및 순서 도출
 - 이전적지/자산 특성/위치에 따라 매각, 임차, 사용권 부여 등 최적의 활용방안을 선정할 기준 및 가이드라인* 제언
- * 가이드라인은 모든 관련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, 지역 경쟁력 보전과 토지 및 공간 구조의 효율적 활용 고려
- 매각, 임차, 사용권 부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추산, 신수도 자금조달 반영방안 마련
- 이전적지 주변부지 개발 방안 제언

□ 한-인니 민/관 금융협력 방안

- 국부펀드 분야
 - 한국 민/관 금융기관*의 인니 신수도 이전 특수목적 펀드 참여 또는 공동운영(Co-GP) 방안 검토 및 제시
- * KIC (한국투자공사), 국민연금(NPS), PIS/GIF 펀드, 수출입은행 및 민간 상업은행
- 한국 민/관 금융기관 대상 세미나 (간담회), 투자설명회 개최

- 자보데타백 지역 정부 자산 분야
 -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의 “국·공유재산관리 개발” 업무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
 - 인니 정부 자산관리를 위한 한-인니 양국간 협력 방안 (AMC-JV 설립 등) 검토 및 제시

[역량 강화]

- 주제별 양국 관련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
 - 한국의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(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행복청 등), 연구기관(국토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)을 방문하여 수도권이전, 국가영토정책 개발, 사회기반시설 및 민간 투자 관련 프로젝트, 한국의 PPP 사례와 관련한 한국 정책 및 실무경험을 공유
 - 세미나, 강의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방안 및 수도권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

[Market Sounding]

- 신수도에 대한 민간 섹터의 투자관점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의견 (Market Sounding) 조사
 - 잠재적인 한국 민간사업자들과 사업에 관련된 실행 가능성, 민간사업자의 사업실행 역량, 시장의 사업수용능력, 시장의 성숙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취합
 - 이를 통해 신수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기업의 시각을 반영

[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]

-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,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

[경제협력 강화]

-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섹터의 투자관점에서 한국기업(금융기관, 공기업, 건설사, 엔지니어링사 등)을 대상으로 시장 의견(마켓사운딩) 조사,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등

IV. 제안서 작성 요령

1. 작성요령

-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(제안서 작성 양식<서식 2> 참조)
- 서식2의 제안서작성 구성중 과업수행계획은 A4용지 25페이지 이내(표지 및 목차 제외)로 아래아한글로 작성 권장
 - * 글자크기 본문기준 13포인트, 글꼴 휴먼명조(영문글꼴 Times New Roman), 줄간격 160%, 좌우여백 25mm, 상하여백 각각 20mm, 15mm로 작성
 - * 단, 표 안의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사용 가능
 - * A4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A3용지(A4 2매로 간주)로 작성한 후 접어서 붙임
- 제안서는 무선제본하여 10부 제출
- 제안서 본문 외 실적, 인력 등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는 별책으로 무선제본하여 2부 제출
 - *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,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, 제안서의 반환 요구도 불가함.

2.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우리 공사는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,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(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)
-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

제출서류목록

구 분	제 출 서 류	부수	비고	담당
①입찰참가자 격 증명서류	1) 입찰참가신청서	1부	서식1	공통
	2)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	1부	나라장터 홈페이지	각사
	3) 입찰보증금 (입찰보증보험증권)	1부	-	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
	4) 법인등기부등본	1부		각사
	5) 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원본대조필	각사
	6) 법인인감증명서	1부		각사
	7) 사용인감계 (사용인감사용 시)	1부		각사
	8)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(대리인의 경우)	1부		대표사
②제안서	1) 기술제안서 본문	10부	서식2	공통
	2) 증빙서류 (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, 실적증명서(기업, 인력), 경력증명서(인력), 자격증명서 사본 등)	2부	사본은 원본대조필. 제안서 본문과 별책으로 제본	
③기타서류	1) 청렴계약이행서약서	1부	서식3	각사
	2) 조세포탈확인 서약서	1부	서식4	각사
	3) 공동수급표준협정서 (공동수급체 구성 시)	1부	-	공통

※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“원본대조필” 명기하여, 인감(또는 사용인감) 날인 후 제출하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※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

※ 기술제안서 본문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서식2의 ‘제안서 작성 양식’에 따라 작성하고, 각각 무선제본하여 제출. 그 외는 제본(무선, 스프링, 링바인딩 등)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 제출

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

1.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

□ 기술능력평가 항목

구 분	평 가 항 목(배점)	평가 방법	평점 만점	평가 결과
1. 계량 평가 (30점)	① 전문인력 적정성 (12) - 재무분야 업무 수행경험 (6) * 경제발전전략, 경제영향분석, 자금조달, 재무설계 및 관리, 해외투자, 사업성 분석, 펀드, 금융 등 - 도시분야 업무 수행경험 (6) * 기본계획 수립, 마스터플랜 수립, 타당성조사, 기본 설계, 상세설계 등 - 발주처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한 문서에 따른 평가	정량 평가 주1)	12	
	② 신청기업의 용역수행 실적 (10) - 제출된 실적증명서에 따른 평가		10	
	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(8) -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		8	
2.비계량 평가 (70점)	① 과업지시서 이해도 (10) - 대상국, 발주처, 사업성과 목표 및 과업내용의 이해도	정성 평가 주2)	10	1×【 】 = ()
	② 과업 수행 내용 I (20) -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- 과업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- 과업관리방안의 적정성		20	2×【 】 = ()
	③ 과업 수행 내용 II (20) - EIPP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·지역 전문성 - 우리기업 해외 진출 연계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		20	2×【 】 = ()
	④ 과업추진체계 및 방식, 과업수행계획 (20) -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- 과업수행 조직 및 전문가 투입계획 적정성		20	2×【 】 = ()

※ 【 】에는 1-4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점(10/9/8/7), ()에는 가중치를 곱하여 세부항목별 점수 기재

주1) 계량평가(정량 평가) 세부 평가기준

① 전문인력 적정성

가. 분야별(재무, 도시) 책임연구원의 자격 기준

구 분	자격 기준
책 임 연구원	해당 과업수행을 지휘·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, 박사, 기술사, 회계사, 변호사,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·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·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·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

-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자격증 및 학위 사본, 경력증명서) 제출
-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 제외

나. 분야별(재무, 도시) 책임연구원의 용역수행실적

구 분	평점
100% 이상	배점 × 100%
70%이상 100%미만	배점 × 90%
40%이상 70%미만	배점 × 80%
40%미만	배점 × 70%
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아래 분야에 해당되는 용역
수도이전, 신도시, 행정중심복합도시, 혁신도시, 경제자유구역, 산업단지, 도시개발, 스마트시티, 기반시설 건설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자문 및 컨설팅*
- * 컨설팅 업무 : 상기사업에 대한 영향분석, 지역경제 및 사업성 분석, 전략수립, 기본 계획 수립, 마스터플랜 수립, 타당성조사, 기본설계, 상세설계 등은 인정하되, 단기 교육, 조사(survey), 단기 연구용역(2개월 미만), 실험용역 등은 제외
-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기구가 발주한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 등에 대한 해당 분야 경제·사회개발 국제컨설팅 용역 실적(100% 인정)
-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국내정책연구용역 실적(50% 인정)
- 평가방법 : 수행실적 = (유사용역수행금액/본용역금액) × 100

※ 평가대상 책임연구원의 수행업무 증빙(발주기관의 참여인력 확인서류, 용역보고서(착수, 결과)의 참여인력 명시)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

※ 입찰자의 해당 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자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

② 신청기업의 용역수행실적

구 분	평점
100% 이상	배점 × 100%
70%이상 100%미만	배점 × 90%
40%이상 70%미만	배점 × 80%
40%미만	배점 × 70%
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아래 분야에 해당되는 용역
수도이전, 신도시, 행정중심복합도시, 혁신도시, 경제자유구역, 산업단지, 도시개발, 스마트시티, 기반시설 건설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자문 및 컨설팅*

* 컨설팅 업무 : 상기사업에 대한 영향분석, 지역경제 및 사업성 분석, 전략수립, 기본 계획 수립, 마스터플랜 수립, 타당성조사, 기본설계, 상세설계 등은 인정하되, 단기 교육, 조사(survey), 단기 연구용역(2개월 미만), 실험용역 등은 제외

-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기구가 발주한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 등에 대한 해당 분야 경제·사회개발 국제컨설팅 용역 실적(100% 인정)

-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국내정책연구용역 실적(50% 인정)

※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, 공동수급 계약서에 명시된 참여사별 담당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실적 평가,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본 사업 참여사가 수행업무 증빙(사업명, 사업 내용 및 기간, 정산완료 금액이 명시된 실적증명서 등 영문 및 국문 문서만 해당)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

- 평가방법 : 수행실적 = (유사용역수행금액/본용역금액) × 100

- 계산방법 : 공동수급의 경우 각 사별 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

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

신용평가등급			평점
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	
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배점 × 100%
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배점 × 90%
B+, B0, B-	B-	B+, B0, B-	배점 × 80%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배점 × 70%

- 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,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함
- * 신용평가등급은 가장 최근의 등급과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며, 다수를 제출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
- *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
- * 공동수급의 경우 각 참여사 지분율을 해당 기업의 점수와 곱한 후 합산하고,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
- *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적용함
- *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공공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학교 등 예외취급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재무안정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

주2) 비계량평가(정성 평가)

- 용역수행 능력·적합성 등의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평가
(매우우수 : 10, 우수 : 9, 보통 : 8, 미흡 : 7)

□ 기술능력평가 점수산정

- 점수 : 기술능력평가 득점 × 90%

※ 기술능력평가는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(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모든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)

주3) 가격평가 및 배점한도(10점)

-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

※ 여기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 등 국가계약관련 규정에 따름